

서울고등법원 2015. 12. 9 선고 2014나2048819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항소인 기술신용보증기금

피고, 피항소인 사회복지법인 무궁화동산

변 론 종결 2015. 11. 18.

판결 선고 2015. 12. 9.

제 1 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7. 선고 2014가합502600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B과 피고 사이에 강원 횡성군 A 전 9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0. 2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에 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2012. 11. 13. 접수 제2007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B의 연대보증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C는 이를 담보로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한다)으로부터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았다. 당시 C의 대표이사인 B은 D과 함께 C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보증일자	채권자	보증번호	보증기한	보증원금 (대출금액)
2008. 4. 1.	외환은행	E	2009. 3. 31.	85,000,000원 (100,000,000원)
2009. 3. 12.	외환은행	F	2010. 3. 11.	200,000,000원 (200,000,000원)

C는 2012. 7. 10. G 주식회사(대표이사 B. C의 대표이사과 같은 인물이다)에 흡수 · 합병되었다(이하에서는 합병 전후를 통틀어 'G'라 한다).

나.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

피고는 2012. 4. 18. G와 사이에 G가 침구용 살균청소기를 개발하고 피고가 이를 생산하여 G에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거래기본계약을 체결하고, G에 위 청소기의 개발비(선금금)로 3억 원을 지급하되 10만대 기준으로 1대당 3,000원을 납품가에 반영하여 개발비 상당액을 회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G에 2012. 4. 16. 1억 원, 같은 달 20. 1억 원, 2012. 5. 10. 1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는 자금난에 빠진 G의 요청에 따라 2012. 6.경 G에 운영자금 1억 원(지급기일 6개월 후, 이자 월 7%)을 추가로 대여하면서, 이 금원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 G의 대표이사인 B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약정하였다(이 때B으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을 제출받았다).

피고는 G가 이자 지급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위 약정에 따른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여 2012. 10. 25. 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2. 11. 13.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원고의 대위변제

원고는 G가 위 대출원리금을 연체하여 2013. 3. 8.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2013.10. 10. 외환은행에 87,389,020원 및 187,683,89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3호증, 을 1 내지 6호증(가번호 있는 경우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G의 대표이사인 B은 원고와 G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을 연대보증한 자로서자신이 경영하는 G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위 신용보증부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서도 개인 소유의 책임재산을 일출(逸出)하기 위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피고 또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로 인해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리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2001. 5. 8. 선고 2000다66089 판결, 2001. 10. 26. 선고 2001다1913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연대보증채무자가 주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위하여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주채무자의 특정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하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8832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비록 G의 대표이사이자 연대보증인인 B이 2012. 6.경 및 2012. 10.경 계속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토지가 B의 유일한 재산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인정 사실과 위 각 증거, 을 8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당시 감정인 H의 시가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연대보증채무자인 B은 피고로부터 자금을 융통하여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채무자 G의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하고 자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주고 피고로부터 추가로 1억 원을 대여받아 G의 사업이 계속 될 수 있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고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B은 1998. 5.경 'I'이라는 상호로 시제품 제작업을 하는 개인사업체를 시작하였고, 2006. 6.경에는 I, C, G(C와 G는 사실상 1인 회사이다) 도합 3개 업체를 동시에 운영하는 상황이었으며, 그동안 I 으로부터 얻은 수익 중 상당한 금액을 C와 G에 투입하였다.

② G는 2012. 6.경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고에게 위 살균청소기의 마케팅과 관련하여 1억 원을 추가로 차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미 위 살균청소기의 생산 및 납품을 위하여 선금금 3억 원을 교부한 피고로서는 G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게 되면 이미 지급한 선금금도 회수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부득이 추가 금원을 지급하면서 B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1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하였는데, 위 대여금이 1억 원이고 이로써 G에 대한 총 교부금액이 4억 원임에 비하여 이 사건 토지의 2012. 10. 25. 당시의 시가는 그보다 상당히 낮은 39,798,500원이고, 2012. 6. 20. 무렵의 시가도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된다.

③ B은 추가로 차용한 위 1억 원 중 도합 32,000,000원 정도를 G를 위해 사용하였고, 나머지 금액 중 상당 부분은 I 을 위하여 사용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의 시가에서 위 32,000,000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80%를 상회하고, B으로서 위 3개 업체를 서로 분리해서 운영하기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이로 인해 위 업체들 사이에 자금이 지속적으로 오고간 것으로 보인다).

④ G는 2012. 6.경 위와 같이 추가로 1억 원을 차용한 후 이듬해인 2013. 3.경까지 사업을 계속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김용석, 판사 강상욱, 판사 박영주